

의안번호	2203510
의 퇴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4.10.29.
추계번호	24D3396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제2항(소방교육·훈련) 신설	소방대원 교육·훈련 내용에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¹⁾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의 화재 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제2항(소방교육·훈련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III. 미첨부 사유

□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대응에 대한 교육·훈련(안 제17조제2항 신설)

- 개정안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화재 대응 방법 등을 소방대원 교육·훈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교육·훈련 시설 확보 및 장비 구매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- 다만,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·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의 규모 및 기존 교육·훈련 시설 활용 여부, 해당 교육·훈련 주기 및 대상자 수, 훈련용 자동차 및 전용 소화장비 구매 수량과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소방청에 따르면, 현행 소방대원 대상의 교육·훈련에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교육·훈련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소방학교 등에서 일회성으로 실시된 사례는 있음
 - 참고로, 관계부처 합동 ‘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’(2023. 6. 29.)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3년 기준 31만기 설치되어 있고, 2025년 59만기, 2027년 85만기, 2030년 123만기가 보급될 계획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